

인터넷 뮤직비디오 표시사항 및 관련법률 안내

2021.01.01. 시행

우리 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영화비디오법)」 제72조에 의거 영상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소비자에게 올바른 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위반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뮤직비디오 관련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뮤직비디오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구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받은 경우	방송사 자체 심의 받은 경우
등급 표시	<p>초기화면에 해당하는 등급 표시</p> <p>ALL 사각형 안에 녹색 바탕으로 "ALL" 표시</p> <p>12 사각형 안에 노란색 바탕으로 "12" 표시</p> <p>15 사각형 안에 주황색 바탕으로 "15" 표시</p> <p>18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18" 표시</p>	<p>초기화면 오른쪽 상단에 해당하는 등급 표시</p> <p>7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7"</p> <p>12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12"</p> <p>15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15"</p> <p>19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19"</p> <p>※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의 경우 별도의 기호 표시 없음</p>
상호나 그밖의 사항	<p>뮤직비디오 초기화면에 제작사(기획사)명 표시</p>	<p>뮤직비디오 초기화면에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 표시</p>
청소년 보호 조치	<p>청소년관람불가(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뮤직비디오 경우, 비디오물 시청 제공 전 반드시 청소년 보호 조치(성인인증 절차) 필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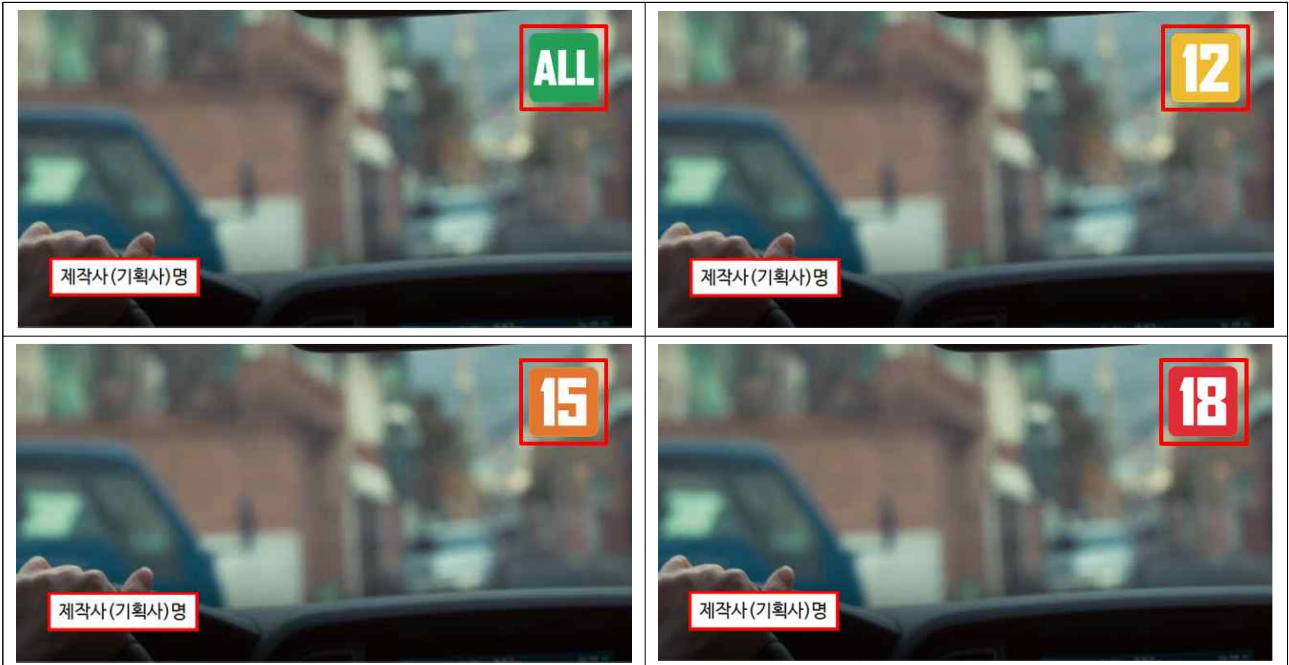
※ 등급표시는 뮤직비디오 영상 시작 전에 표시하거나, 영상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등급 표시는 3초 이상

II

표시방법 예시

□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경우



□ 방송사 자체 심의 받은 경우



※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의 경우 별도의 등급기호가 없으므로 방송사명과 방송심의일자를 표시

1 표시 사항 관련

Q) 개정된 표시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A) 2021년 1월 1일 부로 시행

Q) 시행 이전에 등급분류 받은 작품의 등급 표시를 변경해야 하는지?

A) 시행일자(2021.01.01.) 이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한 작품부터 적용

Q) 연령등급 아이콘의 색상을 임의로 표시해도 되는지?

A) 법령상에 명시된 색상 사용(전체: 녹색 / 12세: 노란색 / 15세: 주황색 청불: 붉은색)

Q) 뮤직비디오 내에 등급 등 표시의무 주체는?

A) 표시의무는 제작업자, 배급업자에게 있음

Q) 등급표시 시간은 어느 정도 표시하여야 하는지?

A) 영상 시작부터 3초 이상

Q) 방송에 방영된 뮤직비디오의 표시사항은 어떻게 다른지?

A)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25조에 의거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심의일자', '방송사명'을 표시

2 등급분류 대상 관련

Q) 인터뷰, 메이킹 영상, 안무연습, 악기연주 등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는 등급분류 대상인지?

A) 「음산법」 제2조 6호에는 음악영상물에 대한 정의를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가. 인터뷰 뮤직비디오는 음원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터뷰 장면 사이에 뮤직비디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는 형태로 음악영상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등급분류 대상 아님.**

나. 안무연습, 메이킹 영상 등 메인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과정의 영상으로 구성된 뮤비는 주된 내용이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영상으로 보기 어려워 **등급분류 대상 아님.**

다. 악기연주 동영상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급분류 대상 아님.**

Q) 교육·학습, 종교활동 관련 뮤직비디오는 등급분류 대상인지?

A) 교육·학습 및 종교활동 관련 비디오물은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 규정하고 있음.

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학습용 비디오물은 **등급분류 대상 아님.**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육·학습용 비디오물은 **등급분류 대상 아님.**

다. 설교·복음·찬송 등 종교의례와 관련된 비디오물은 **등급분류 대상 아님.**

Q) 드라마OST 등 방송사 자체 심의를 거친 뮤직비디오는 등급분류 대상인지?

A) 방송사를 통해 자체 심의된 드라마OST 등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다시 등급분류 받을 필요가 없으나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을 표시해야 함 ※관련근거: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제25조

3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자 관련 (※이하“제공업자”)

Q) 개인이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제공업자 사이트에 공개할 경우 등급분류 대상 여부?

A) 개인이 제작 또는 유통하는 뮤비는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지만, 제공업자 사이트에 공개하는 뮤비는 등급분류 대상으로, 제공업자는 자신의 사이트에 등급분류 받은 뮤비만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영화비디오법 제95조 6호에 저촉 될 수 있음.

Q) 제공업자의 표시사항 관련하여 뮤직 서비스 페이지에 등급표시를 해야 하는지?

A) 영화비디오법 제50조 1항 2호 단서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자를 등급분류 의무의 주체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들이 제작뿐만 아니라 유통 및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영화비디오법 제53조 2항에 의거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표시 필요

4 기타사항 관련

Q) 티저 뮤비는 등급분류 대상인지?

A) 티저 뮤비는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
※단, 메인뮤직비디오를 등급분류 받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 중에서 티저 뮤비를 제작할 경우 등급분류 대상 아님)

Q) 방송사심의를 거쳤으나 방송되지 않은 뮤비의 경우에도 영등위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A) 영등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심의일자, 방송사명을 표기하여야 함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6조·제65조·제66조·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제97조·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본다. <개정 2015. 5. 18.>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등급분류)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표시의무)

제65조(표시의무)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3항 관련)

1. 상호나 그 밖의 사항 표시: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은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이나 끝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2.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표시는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급표시를 하는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화면 대각선 길이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가. 전체관람가 등급: 사각형 안에 녹색 바탕으로 "ALL"을 표시한다.
 - 나.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사각형 안에 노란색 바탕으로 "12"를 표시한다.
 - 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사각형 안에 주황색 바탕으로 "15"를 표시한다.
 - 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18"을 표시한다.
3.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내용정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정한 항목(최대 3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표시의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에 3초 이상 표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비디오물은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는다.

항목표시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영상물 중 제2호의 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에 갈음해 초기 화면에 문자로 등급과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다.
5.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비디오물은 제1호와 제2호의 게재사항 외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을 비디오물을 시청하기 전에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 법 제6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1. 삭제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번호(법 제50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4.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①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 가.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육·학습용 비디오물
 - 다. 설교·복음·찬송 등 종교의례와 관련된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추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문화교류·자선·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②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이 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